

고 시 문

서울지방우정청 고시 제2017 - 8호

우체국 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에 의거 우편취급국 위탁업무의 내용 변경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6월 1일

서울지방우정청장

1. 위탁업무의 내용 변경 내역

우편취급국명 (총괄국명)	수탁자	위탁업무의 내용		비고
		변경전	변경후	
서울제기2동 (동대문)	백○자	1. 우표류 및 수입인지의 판매 2. 우편물의 접수 3. 우체국보험 모집 및 수금 4. 우편환 발행 및 지급	1. 우표류 및 수입인지의 판매 2. 우편물의 접수 3. 우체국보험 모집 및 수금	

2. 우편환 발행 및 지급 업무 종료일 : 2017.06.30.(금) 업무마감 후

3. 존속기한 : 이 고시는 위탁업무 변경일(2017.7.3.)까지 유효.